

의 안 번 호	1622	【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20. 4. 29.(수)
- 나. 제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3.(수)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인원을 추가하고, 협의회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9명 이내 → 11명 이내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나. 대형유통기업·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명 → 3명으로 변경(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)
- 다. 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 추가(안 제8조제5항제2호)
- 라.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추가(안 제9조제5항제1호의2)
- 마. 대규모점포등이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조항 추가(안 제13조의2제2항)
- 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근거법규
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5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 위원 확대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큰 거 법 규

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-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

려운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4조의3(협의회회의 운영 등)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회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
1의2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5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)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개설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
2. 개설지역(주소)
3. 영업개시예정일
4. 대규모점포등의 종류
5. 매장면적(m²)

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. <신설 2019. 9. 2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. <개정 2019. 9. 27.>